

부산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436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436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23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점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권지혜

변론 종결 2022. 6. 9.

판결 선고 2022. 7. 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239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8. 4.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각 61,652,05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61,652,0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07,142,857원, 피고 C 및 D은 각 7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4.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07,142,857원, 피고 C, D은 각 7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4.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4행, 8면 1, 2, 4행, 12면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 5면 13행부터 18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 6면 2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차용금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만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처럼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당일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망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건네 준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 경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망인은 대출을 받거나 대여하였던 금전을 변제받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망인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들은, 망인이 2015. 10. 15. P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10. 23. Q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계좌에 2015. 10. 15. P으로부터 50,000,000원이 입금된 후 2015. 10. 15.부터 2015. 10. 16.까지 합계 49,980,200원이 출금되었고, 2015. 10. 23. Q으로부터

2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19,123,680원이 R회사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각 금전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들은, 망인이 S에게 여관을 양도하며 권리금 35,000,000원, 전세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T로부터 160,000,000원을 변제받아 위 각 금전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2016. 1. 28. S로부터 150,000,000원, 2015. 12. 7. T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각 금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5. 11. 27. 이후에 망인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명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원고는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망인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 U은 2013. 10. 16. V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면서 2013. 10. 21.부터 2013. 10. 29.까지 위 회사의 퇴직소득으로 합계 1,324,768,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10. 29.부터 2013. 11. 5.까지 위 퇴직소득 중 71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정도 없는 등 원고의 채무에 관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6면 3행의 "3) 소결론"을 "4)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은정

판사이재욱

판사박운삼

별지